

의결번호	제 2018 - 11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8. 12. 14. (제 8 회)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출자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출연월일	2018. 12. 14.

1. 의결주문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
- 연금수급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

3. 주요내용

- 대부한도 확대
 - (현행) 최고 750만원 → (개선) 최고 1,000만원
- 시행시기
 - 2019년 1월부터 적용

4.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대로 심의하였음

< 별 지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

2018. 12. 14.



목 차

I. 사업 개요 및 경과

II.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성

III. 제도 개선 방안

○ 대부한도 확대

【 참 고 】

1.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실적

2.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고객 개선요구

I

사업 개요 및 경과

1. 사업 개요

- (대상·용도)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 (대부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750만원) 에서 실 소요 금액
- (대부이자)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 변동금리(18년 4/4분기 연 2.25%) 적용, 연체이자는 대부이자의 2배
- (상환)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방식(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상환)
- (규모·시행주체) 2018년도 342억원
 - 신청·접수, 대부금 지급결정, 사후관리 등 연금공단 직접 수행

2. 추진 경과

- 2011. 4월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사업추진계획(안) 의결
- 2012. 5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국민연금실버론) 시행
- 2013. 9월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의결
 - 연대보증인 입보 및 보증수수료(연 0.5%) 폐지
- 2014. 6월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대여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의결
 - 대부용도, 이자 등 사업의 기본 틀은 현행 유지
- 2015. 2월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대여사업 개선방안 의결
 - 대부한도 상향(최고 750만원), 거치기간 설정(1년 또는 2년 선택)
- 경제관계장관회의(18.7.18, 경제부총리 주재)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에 '지원 한도 확대(750 → 1,000만원)' 포함

II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성

1. 사업실적

□ (대부금 지급) 그간 총 50,970명에게 2,244억원 대부<'18.10월기준>

○ 2015년 341억원, 2016년 342억원, 2017년 342억원을 대부

- 1일 평균 대부금액이 1.4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

○ 대부금은 긴급자금 대부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청당일 67.9%(34,605명), 익일까지 94.9%(48,392명) 지급

< 대부금 지급 현황 >

(2018.10.31.누계, 단위: 건, %, 억원)

계		전·월세자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970	2,244	30,694	1,596	19,370	602	705	37	201	9
(100)	(100)	(60.2)	(71.1)	(38.0)	(26.9)	(1.4)	(1.6)	(0.4)	(0.4)

□ (대부금 상환) 상환대상 1564.8억원 중 1556.9억원(99.50%)을 정상 상환, 7.8억원 미상환(0.50%)

○ 상환방법은 연금공제 50,732명(99.5%), 자동이체 238명(0.5%)

○ 미상환율은 햇살론 등 다른 서민금융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

국민연금실버론 ('18.10월현재)	햇살론 ('18.7월)	미소금융 ('18.7월)	새희망홀씨 ('18.7월)	바꿔드림론 ('18.8월)
0.5%	8.1%	4.6%	2.5%	28%

2. 개선 필요성

- (고객 요구) 이용자 만족도는 사업 시행 이후 매년 9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나

* 만족도 : ('13) 90.8%, ('14) 91.8%, ('15) 90.7%, ('16) 92.5%, ('17) 92.8%

- 개선의견으로 **대부한도 증액(32.1%), 대부용도 확대(26.4%)**가 다수

* 고객 개선의견 1,263건 분석결과 대부한도 증액 406건(32.1%), 대부용도 확대 333건(26.4%)

- (사회안전망 확충)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18.7.18, 경제부총리 주재)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

☞ 60세 이상(국민연금수급자 대상)에 대한 의료비·전월세비 등 생활 안정자금 대출지원 한도를 750 → 1,000만원으로 확대

- (주택시장 동향) 최근 금융시장 기준금리(COPIX, CD 등) 인상 기조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금리 상승*, 전월세 거래량 증가** 등으로 인한 주거지원 필요

* 최근 3년간 신규취급액기준 COPIX 변동 추이(은행연합회, 각년도 10월) : ('16) 1.41% → ('17) 1.62% → ('18) 1.93%

☞ 시중은행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2.87~4.09%(주택금융공사)

** 전월세 거래량 : 85.4만건(최근 3년평균) → 93.4만건(18년 상반기)('18.7월, 국토부)

Ⅲ

제도개선 방안 (대부한도 확대)

- (대부한도) (현행) 최고 750만원 → (개선) 최고 1,000만원
 - 수요가 많은 전월세자금의 평균임차보증금*(2,040만원), 대부자의 평균연금월액(45.4만원)과 평균상환부담률(36.8%), 대부한도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18년 전월세자금 대부자 표본조사(430명) 결과 평균 임차보증금액
 - ** 대부한도 변동 추이 : 500만원('12.5) → 750만원('15.7) → 1,000만원('19 예정)
 - 최근 대부자의 평균연금월액(45.4만원)을 대부금액 한도인 연간연금액 2배로 환산시 1,090만원(45.4만원×12개월×2년, '17.11~'18.10 6,456명 분석)
 - 월평균연금액 대비 상환부담률은 36.8%*로 대부한도 750만원 (평균부담률 27.5%)과 비교 시 9.3%p 증가
 - * 대부자 월평균 연금액(45.4만원) 대비 월평균 상환액(16.7만원)의 비율
 - (소요 예산) 2019년 예산 389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전년 대비 47억원 증액('18년 342억원 → '19년 389억원, 13.8% 증)
 - 1인당 평균대부액은 440만원(전체평균)에서 568만원('19)으로 증가
 - (기타) 실 소요 비용과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는 현행 유지
- (기대효과) 대부 수요가 가장 많은 전월세자금 추가 지원을 통해 노후 주거안정에 기여
 - 수급자의 요구사항 개선을 통한 제도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향후계획)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지침개정 및 전산프로그램 보완 후 2019년 1월부터 개선방안 적용

- 대부한도를 확대(현행: 최고 750만원 → 개선: 최고 1000만원)하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
 - 국민연금법에 복지사업 시행 근거가 있고, 긴급자금 지원을 통한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 측면으로 볼 때 국민연금 목적에도 부합하며
 - 대부 이용자의 만족도와 상환율이 높고, 연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을 심의함
- *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

□ 대부금 지급 : 총 50,970명, 2,244억원

- 1일 평균 대부금액은 1.4억원 수준
- 대부금은 긴급자금 대부의 취지를 감안 신청당일 34,605명(67.9%), 익일까지 48,392명(94.9%) 지급

□ 대부 현황 : 주로 7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자, 전·월세자금

- (연령별) 70세 미만 44,707명(87.7%), 70세 이상 6,263명(12.3%)
- (용도별) 전·월세자금 30,694명(60.2%), 의료비 19,370명(38.0%), 배우자 장제비 705명(1.4%), 재해복구비 201(0.4%) 순
- (대부금액 및 상환기간) 1인 평균 대부금액*은 4,404천원, 평균 상환기간은 52개월

* 1인당 평균금액 : 배우자 장제비 5,224천원, 전·월세자금 5,199천원, 재해복구비 4,776천원, 의료비 3,109천원 순

- (급여유형별) 노령연금수급자 47,432명(93.1%), 장애·유족·분할연금 수급자 3,538명(6.9%)

□ 대부금 상환 : 상환대상 1564.8억원 중 1556.9억원(99.50%)을 정상 상환, 7.8억원 미상환(0.50%)

- (상환방법) 연금공제 50,732명(99.5%), 자동이체 238명(0.5%)

□ 제도 개선 : '연대보증인 입보'와 '보증수수료 선 공제(연 0.5%)' 폐지

- 제도 개선(2013.10.1.) 후 신규 대부신청자 35,239명에게 혜택 (연대보증인 입보 해소 7,359명, 보증수수료 부담 해소 27,880명)

□ 대부금액별 현황

(2018.10.31.누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1백만원이하		1~3백만원		3~5백만원		5~7.5백만원 미만		7.5백만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0,970	224,449	3,059	2,110	11,140	25,071	25,815	120,643	4,545	28,767	6,381	47,858
전월세자금	30,694	159,591	296	274	3,383	8,856	18,170	87,591	3,206	20,577	5,639	42,293
의료비	19,370	60,215	2,763	1,836	7,674	15,993	7,070	30,390	1,254	7,653	579	4,343
장제비	705	3,683			59	162	432	2,002	73	462	141	1,057
재해복구비	201	960			24	60	143	660	12	75	22	165

□ 연령별 현황

(2018.10.31.누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60세~64세		65세~69세		70세~74세		75세~79세		80세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0,970	224,449	29,261	134,503	15,446	65,905	4,922	19,236	1,159	4,256	182	549
전월세자금	30,694	159,591	18,752	99,383	8,888	45,340	2,478	12,120	515	2,474	61	274
의료비	19,370	60,215	10,050	32,670	6,290	19,218	2,299	6,427	616	1,650	115	250
장제비	705	3,683	340	1,863	206	1,054	130	627	24	117	5	22
재해복구비	201	960	119	587	62	293	15	62	4	15	1	3

□ 상환기간별 현황

(2018.10.31.누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1년 이하		1~2년		2~3년		3~4년		4~5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0,970	224,449	2,030	2,004	3,875	10,141	5,669	21,580	5,025	22,172	34,371	168,552	
미거치	46,558	198,724	1,964	1,918	3,761	9,767	5,416	20,387	4,788	20,804	30,629	145,848	
거치	소계	4,412	25,725	66	86	114	374	253	1,193	237	1,368	3,742	22,704
	1년	1,178	6,311	53	75	77	229	127	563	118	690	803	4,754
	2년	3,234	19,414	13	11	37	145	126	630	119	678	2,939	17,950

□ 실버론 고객 VOP(Voice of people) 내용 분석

(‘18년 7월말 누계, 단위: 건, %)

고객 VOP 내용	건수
계	1,263
· 대부한도 증액	406 (32.1%)
· 대부용도 확대	333 (26.4%)
· 구비서류 / 절차복잡	137 (10.9%)
· 대부자격 완화	101 (8.0%)
· 대부연령 확대	58 (4.6%)
· 채권관리 불만	51 (4.0%)
· 상환기간 연장	20 (1.6%)
· 추가대부 요청	10 (0.8%)
· 기타*	147 (11.6%)

* 기타는 이자율, 배우자 통장입금, 홍보강화 등